

법문화진흥센터 지정서

지정번호 : 제 호

법문화진흥센터 지정서

1. 법문화진흥센터의 명 칭 :
2. 법문화진흥센터의 대표자 :
3. 법문화진흥센터의 소재지 :
4. 법문화진흥센터 지정기간 : 0000. 00. 00. ~ 0000. 00. 00.

「법교육지원법」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
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법 무 부 장 관 (직인)